

■ 2021 미포 3차포럼 ■

# 장로교 총회들은 보편적 고통을 보듬고 있는가?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진행>

- **일시**\_ 2021년 8월 27일(금) 11:00-15:30
- **장소**\_ 대전한밭교회  
오프라인 - 대전시 서구 만년남로 3번길 107(만년동)  
온라인 - 유튜브 미래교회포럼 채널에서 생중계
- **강사**\_ 이현철교수(고신대)  
<장로교 총회들이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헌의안 분석)>  
정성업목사(한교총/ 합신 총무, 남은교회 담임)  
<정부 정책에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문의**\_ 오병욱 미포대표 010.3889.8803  
이세령 사무총장 010.5342.2509

주관 미래교회포럼

2021 미래교회포럼 복음과 보편적 고통

## 3차 포럼

# 장로교 총회들은 보편적 고통을 보듬고 있는가?

일시 2021년 8월 27일(금) 11:00-15:30

장소 대전한밭교회당, 온라인 줌

주최 미래교회포럼

## 목 차

# 인사말과 기도(11:00-11:10) 오병욱 목사(미래교회포럼대표)

# 발제 1(11:10-11:55). 이현철 교수(고신대)

장로교 총회들이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고신헌의안을 중심으로)

논찬 (11:55-12:05) 김일국 목사(김해 늘푸른전원교회)

질의응답(12:05-12:30)

# 점심식사(12:30-14:00)

# 발제 2(14:00-14:45) 정성엽 목사(한교총/합신총무, 남은교회담임)

정부 정책에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논찬 (14:45-55) 손재익 목사(한길교회 담임)

# 전체 질의응답과 토론(14:55-15:30)

## 모시는 글

오병욱목사  
(미래교회포럼대표, 천안하나교회담임)

미래교회포럼을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며, 여러분을 제3차 포럼에 초청합니다. 미래교회포럼은 지금까지 해마다 교회의 주변 상황들을 아우르는 한 주제를 택해서, 4차례 정도 지역에서 모이고 연말에는 전국세미나로 그 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금년 2021년에는 “복음과 보편적 고통”이라는 전체주제를 정하고 두 차례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가 고통 하는 세상을 품기 바라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포럼을 잘 마쳤고, 이번에 제3차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3차 포럼은 9월에 있을 장로교단들의 총회를 염두에 두고 “장로교총회들은 보편적 고통을 잘 보듬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 분의 강사님은 금년 각 교단총회에 올라온 헌의안들을 분석해서 “장로교총회들이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고, 다른 한 분은 “정부 정책에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구 발표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일간지를 통해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말을 읽었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인이다 걸린다 해도 사망률은 2% 정도다. 지금 우리에게는 모두 죽을 수 있는 핵무기, 기후변화, 자원 고갈, 불평등 같은 더 심각한 위협들이 있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한다.” 인류는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주 기독교보 1면에 ‘예배 제한 불만 헌의안으로 표출’이라는 제목으로 제71회 총회에 81건의 상정 안건이 배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예배 제한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 정년 연장 관련 안건, 목회자의 노후를 위한 은급 지원금의 지급보장, 학교법인의 미래를 위한 건의안 등이었습니다. 중요하지만, 알고 보면 모두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도록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보다 더욱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교회가 총회로 모여서 무엇보다 우선할 일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세계적 위기 속에 있는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가올 총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고통 하고 멸망이 가까이 오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누가 부총회장이 되고, 누가 임원이 되고, 이사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3차 미래교회포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다 본질적인 관심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총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안건들을 많이 논하는 고신총회,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성(聖) 총회”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고신총회가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 제71회 고신총회 헌의안 분석을 중심으로

이현철 목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sup>1)</sup>

### 1. 서론 : “코로나 상황 그리고 한국교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의 사역 자체는 ‘STOP’ 되었습니다. 여름 시즌 주일학교와 수련회 사역도 비대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였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재확산세 속에서 다시 상향된 방역수칙을 받았는데 그 지침에 따라 저희는 계획된 내용들 모두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모임 자체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도들과 다음세대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2021년 여름, 지역 내 거점교회인 00교회 목회자의 고백

질병관리청은 2021년 8월 11일 현재 코로나 일일 확진자를 2,222명으로 보고하였으며, 이후 지속해서 2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sup>2)</sup> 코로나 재확산 세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8월 13일 현재 00시 기준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로 격상이 된 상태이다.<sup>3)</sup> 이러한 재확산 세

1) 이현철 목사는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교수, 대구서문로교회 기관목사이다.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교육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박사,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교육학과 박사후연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미국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박사(수료) 과정에서 공부하였다. 기독교교육을 포함한 실천신학, 교육학, 사회학 분야에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논문 총피인용 수 최상위 연구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연구재단(정부)으로부터 신진·중견연구자 사업에 선정되어 ‘한국교회의 진입장벽, 산간벽지 교회, 소형교회 은퇴목회자’ 등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2) 질병관리청(202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발생현황 통계자료. <http://ncov.mohw.go.kr/> 2021년 8월 13일 검색.

3) 질병관리청(202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발표 자료. <http://ncov.mohw.go.kr/>

의 움직임은 연령대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에 국민의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즉, 안정적인 집단면역 체제가 기능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돌파 감염이나 변이감염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기존 방역체제와 대응법의 기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요구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범유행(pandemic) 속에서 한국교회는 교계의 초교파적인 연합협의체와 주요 교단별로 그 엄중함을 인식 및 공유하면서 정부의 방역수칙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으며, 사회를 향한 공적 책임을 감당하고자 노력해왔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오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예배당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를 통해서 개인정보 및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며, 교회 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소독 활동과 온도체크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정책에 따라 전염병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제한적’으로 예배의 형식도 대면과 비대면의 체제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상황은 목회자와 성도로서 ‘뼈를 깎아내는 고통과 몸부림’이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노력과 활동은 소수 교회의 감염사례에 대한 일부 정치가 및 공무원들의 비우호적 인식과 언론의 과도한 초점 보도<sup>4)</sup>로 인해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의 상당한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오도(誤導)되었다. 실제로 한국사회의 시선과 인식은 ‘코로나 확산=교회’라는 왜곡된 틀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여파로 인해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술한 상황과 관련하여 2021년 4월 14일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 개신교인 500명, 기자 102명 등 1,40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교회의 대응 및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감염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은 매우 차가운 것으로 드러났다. 비신자들에게 한국교회 신뢰도는 국회보다 낮았고, 비신자 중 85%는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에게 부정적 감정이 들었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교회 책임이 크나?’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전 그룹에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비신자 그룹에서는 82.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sup>5)</sup> 이는 그동

2021년 8월 13일 검색.

4) 특별히 한국교회에 대한 왜곡된 언론보도는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형성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초교파적인 연합협의체 혹은 총회 차원에서의 언론보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본다면 좀 더 효과적인 언론보도 대응과 일관성있는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최승헌(2021). 국회보다 낮은 한국교회 신뢰도…비신자 85%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에게 부정적 감정'. 뉴스앤조이 2021년 4월 16일 기사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54>

안 한국사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섬김과 헌신을 고려할 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감당하였던 수고에 비한다면 참담함을 모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sup>6)</sup>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내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과 복음전파의 실제적인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관련 상황과 지역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지혜로운 정책과 전략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대두시키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는 보편적 고통과 아픔에 대한 교회의 책무성이라는 주제도 관심 두게 하는 사항인데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함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이번 제71회 고신총회의 상정안건들에는 전술한 상황에 대한 전국 교회의 답답함이 담겨 표출된 듯하다. 물론 해당 안건 모두가 총회에 보고되거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정안들의 내용을 분석해보는 지금 교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 관심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책 관련 의제의 형성(Agenda Setting or Agenda Building)은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인지한 관련 집단들이 쟁점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구성<sup>7)</sup>되기에 이번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각 노회 및 교회 현장의 쟁점 요소들이 망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히 본 연구는 상정된 안건 중에서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을 집중 분석하여 코로나19의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목회적 노력과 실천적 방안은 어떠한지, 좀 더 집중 및 개선해나가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를 선험적 그리고 정책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 장로교의 대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고신총회 소속 교회들의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제71회 총회 상정안건(총 81건) 중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

2021년 8월 9일 검색.

6) 하지만 실제 교회와 코로나19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그 실상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2021년 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에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음'을 발표하였고 정부의 집단감염 관련 발표에서도 실제 교회 발 감염 비율은 7.7%(2021년 1월 20일 기준, 전체 확진자 7만3115명/종교시설집단감염 5791명)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백광훈(2021).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가 말해주는 것. 기독교신문 2021년 4월 19일 기사.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25> 2021년 8월 13일 검색.

7) 노재석(2010). 정책형성과정의 복잡성과 의제 지속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14-15.

추출된 상정안건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추출과정은 2021년 8월 5일 총회 헌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노회 및 위원회에서 상정한 총 81건의 상정안건 자료를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로서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이 상정 내용에 있거나, 주요 내용으로서 코로나와 관련한 대응사항을 맥락적으로 담고 있는 상정안건을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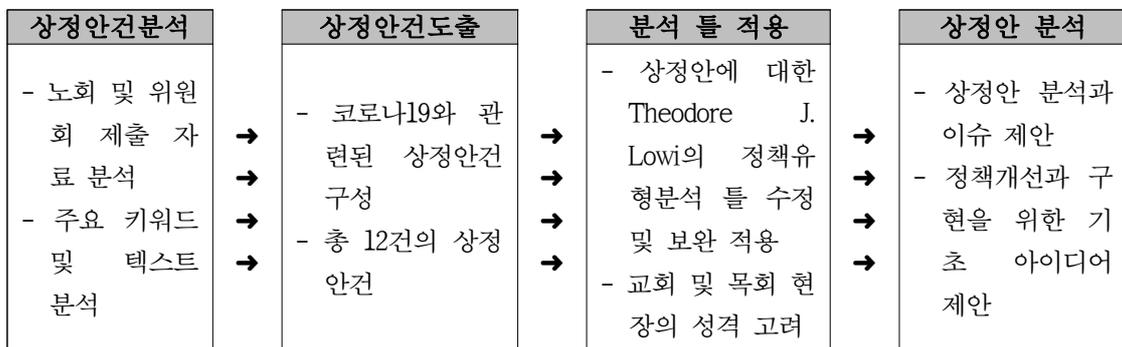
<표 1> 코로나19 관련 상정안건

	상정안건	상정 내용	상정 발의 노회 및 위원회	배정 위원회	비고
1	‘반기독교사회문화 대책 위원회’ 를 ‘대사회관계 위원회’ 로 명칭 변경 청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정부 및 방역 당국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추구	경기북부노회	행정위원회	‘충청동부노회’ 건과 병합(유사안건)
2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의 건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 방향 논의	경기중부노회	신학위원회	-
3	(가칭)고신교단 목회 후보자 양성훈련소 설립 청원	한국교회의 다음세대의 감소에 대비하여 역량있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훈련소 설립	경남김해노회	신학위원회	-
4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의 건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 산하 교회들 및 총회의 대응 방향 논의	경남김해노회	신학위원회	-
5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청원	한국교회의 급속한 하락세 속에서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위원회 설치	경북중부노회	행정위원회	‘미래정책위원회’ 건과 병합(유사안건)
6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건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의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및 전도 전략 연구 요청	부산동부노회	전도위원회	-
7	총회 상회비 삭감 청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성도 및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0% 정도의 상회비 삭감 청원	충청동부노회	예산결산위원회	-

8	고신총회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 발행의 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교회 및 목회적 딜레마 속에서 신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논의(전문연구위원 조직 및 백서 발행)	미래정책위원회	행정법규부	-
9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	현재 노회별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대책과 관련된 지원 논의	미래정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
10	목회자 후보생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총회적 제도 마련 제안	한국교회의 위기와 교회성장세의 둔화 속에서 목회자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 논의	신학위원회	신학교육부	-
11	(가칭) ‘교회자립성장원 준비위원회’ 구성 청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위원회 조직 및 구성	농어촌위원회	행정법규부	-
12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기도와 한 주일 헌금’ 요청의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요청(코로나 사역 관련 교육매체 및 교재 개발)	총회교육원	예산결산위원회	-

## 2) 분석절차 및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상정안건분석→상정안건도출→분석 틀 적용→상정안 분석’의 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신학전공 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 3명(법학 전문가 포함), 현장 목회자 3명(목회경력 20년 이상)을 통한 타당성 확보 과정을 진행하였다.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자 및 전문가 간 타당성 확보 과정 수행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의 특징과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틀로서 Lowi의 유형론의 개념적 내용을 활용하였으나, 그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며 그럴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정책이 전제하는 정부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권위의 주체가 장로교회가 정하고 있는 정치원리인 ‘당회-노회-총회’의 성경적·역사적 의미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절차와 장로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절차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절에서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를 세밀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장로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바라보고 있음<sup>8)</sup>과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supreme authority)를 가지고 계심<sup>9)</sup>을 기억한다면 전술한 양자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차이점을 고려할 때 Lowi의 정책유형론의 개념적 구분을 수정 및 보완없이 상정안건들의 정책유형으로 접목하는 것은 어색하며 합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owi의 유형론이 제안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가능한 목회와 교회현장의 의미로 수정하여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테면 배분정책의 측면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정책으로, 규제정책은 건강한 신학과 목회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교회의 행위를 제한(규제)하는 정책으로, 재분배정책은 개인 혹은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재조정하는 정책으로, 구성정책은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책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이후의 교회 행정 및 교회 정책유형 관련 실천신학적 연구의 기초자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관련 분야의 실천신학적 접근과 논의는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

<표 2> Lowi의 정책 유형론과 적용을 위한 수정 및 보완 의미

구분	기본의미	수정 및 보완 의미
배분정책 (distributive policy)	정부가 구성원들에게 권리, 이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정책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목회/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정책
규제정책 (regulatory policy)	특정한 방향과 내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기관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	신학과 목회적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교회의 행위를 제한(규제)하는 정책

8) 고신총회 총회교육원(202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대하여: “There is no other head of the Church but the Lord Jesus Christ…….”

9) Beeke, Joel R. (2013). *Through the Westminster Confession: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hapter 25.6*. <https://www.reformation21.org/confession/>

재분배정책 (redistributive policy)	개인 혹은 집단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재조정하는 정책	취약한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재조정하는 정책
구성정책 (constitutional policy)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와 관련된 정책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책

###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의 특징과 유형을 구분하여 고신교회가 코로나19의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목회적 노력과 실천적 방안이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유형 및 분석의 틀을 구성하여 상정된 안건을 분석하였으나 몇 가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정책’이 아닌 ‘상정안건’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정안건 자체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기에 해당 사항은 공식적 정책으로 볼 수 없으며, 어떠한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논의 의제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책유형이라는 틀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소간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상은 정책이기보다는 논의 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상정안건 자체가 목회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책이라는 개념으로는 볼 수 없으며, 논의 과정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상정된 안건에 대한 교회 현장 및 구성원들의 실증적인 인식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책 의제 분석은 구성원들의 인식과 필요가 어떠한가를 분석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의 설문조사는 효과적인 분석 방법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정된 의제의 적합성, 적실성, 긴급성, 중요성 등을 살펴보면서 분석되었다면 코로나19의 상황과 관련된 의제의 의미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10)</sup>

셋째, 교회 정책 및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정책 분류 및 틀을 구성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교회 행정과 법(제도 및 정책 포함) 관련 주제는 목회현장에서 매번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는 그 양적인 수준에서 미흡하였다. 실제 교회 정책 유형을 위한 분석 틀이 부재하여 일반

10) 필자는 한국교회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작업을 다양한 수준에서 많이 수행하여 왔으며, 해당 접근법을 통해 도출한 내용의 가치와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별히 신학계의 이론중심적인 연구 풍토와 실천성/적용성 부재는 교회와 관련된 현장지향적인 접근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목회자와 성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학연구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별히 실천신학 관련 학문 분야들의 경우 전술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분석방법론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정책의 틀을 찾아보아야 할 수준이었다. 물론 사회정책유형의 한계를 인식하고 교회 및 목회현장의 적용을 위한 사항을 재구성하고 조정하여 활용하였으나 본질적인 수준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교회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행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유념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sup>11)</sup>

### 3. 분석결과

#### 1) 상정안건의 전체 빈도 및 비율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제71회 총회 상정안건(총 81건) 중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추출된 상정안건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추출과정은 2021년 8월 5일 총회 헌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노회 및 위원회에서 상정한 총 81건의 상정안건 자료를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로서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이 상정 내용에 있거나, 주요 내용으로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대응사항을 맥락적으로 담고 있는 상정안건을 분류하였다. 해당 추출 과정을 통하여 총 12건의 코로나19와 관련된 상정안건을 도출하였다. 해당 상정안은 총 81건의 중 14.81%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약 15%에 해당하는 상정안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 비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총회에 상정되는 의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특정한 주제 및 그와 관련된 이슈에 약 15%에 육박하는 의제는 그 자체로서 노회와 교회들의 관심이 지대함을 의미한다.

#### 2) 정책 유형으로서 상정안건 분류

코로나19와 관련된 상정안건으로 추출된 12건을 교회와 목회현장에 맞게 수정해본 Lowi의 정책 유형의 틀에 적용하여 본다면 <표 3>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정책 유형 구분 시 각 정책 의제가 지닌 다양한 성격을 고려하여 정책 특성의 ‘우선순위

11) 해당 상황은 가톨릭의 연구 풍토 및 지원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가톨릭의 경우 교회법과 제도에 대한 역사적, 교리적, 실천적 분석을 방대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별히 관련 분야의 전공 학위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법 전공 혹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후학 양성을 위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국내 주요 가톨릭대학교 전임교수의 전공 분류를 확인해보라: 가톨릭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교회법의 경우 그 본질적 성격에 있어 간 학문적인 성격이며,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분야로서 그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교회법과 관련된 이슈와 갈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부)와 신학대학원 내 교회법 전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문 후속세대 역시 기존 신학 분류와 틀에서만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혹은 강조점의 수준' 을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였다.<sup>12)</sup>

먼저 1순위의 경우,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사역적 내용과 관련된 배분정책의 영역은 ① (가칭)고신교단 목회 후보자 영성훈련소 설립 청원, ②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의 건, ③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건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개인 혹은 교회의 권리, 재산 등의 요소들을 재조정하는 정책과 관련된 재분배정책의 영역에는 ①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이 해당하였다. 또한,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구성정책의 영역에는 ①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 를 '대사회관계위원회' 로 명칭 변경 청원, ②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의 건, ③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청원, ④ 총회 상회비 삭감 청원, ⑤ 고신총회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 발행의 건, ⑥ 목회자 후보생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총회적 제도 마련 제안, ⑦ (가칭) '교회자립성장원 준비위원회' 구성 청원, ⑧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기도와 한 주일 헌금' 요청의 건이었다. 1순위에서는 규제정책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 3> 정책유형으로서 상정안건 분류

	상정안건	상정 내용	정책유형	
			1순위	2순위
1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 를 '대사회관계위원회' 로 명칭 변경 청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정부 및 방역당국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추구	구성 정책	배분 정책
2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의 건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 방향 논의	구성 정책	배분 정책
3	(가칭)고신교단 목회 후보자 영성훈련소 설립 청원	한국교회의 다음세대의 감소에 대비하여 역량있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훈련소 설립	배분 정책	구성 정책
4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의 건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 산하 교회들 및 총회의 대응 방향 논의	배분 정책	구성 정책

12) 1순위와 2순위로의 성격 구분은 특정한 정책(의제)이 핵심적으로 어떠한 측면을 지향하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해당 정책의 복합적인 의미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청원	한국교회의 급속한 하락세 속에서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정책	배분 정책
6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건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의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및 전도 전략 연구 요청	배분 정책	구성 정책
7	총회 상회비 삭감 청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성도 및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0% 정도의 상회비 삭감 청원	구성 정책	재분배 정책
8	고신총회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 발행의 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교회 및 목회적 딜레마 속에서 신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논의(전문연구위원 조직 및 백서 발행)	구성 정책	배분 정책
9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	현재 노회별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대책과 관련된 지원 논의	재분배 정책	구성 정책
10	목회자 후보생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총회적 제도 마련 제안	한국교회의 위기와 교회성장세의 둔화 속에서 목회자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 논의	구성 정책	구성 정책
11	(가칭) ‘교회자립성장원 준비위원회’ 구성 청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위원회 조직 및 구성	구성 정책	재분배 정책
12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기도와 한 주일 헌금’ 요청의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일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요청(코로나 사역 관련 교육매체 및 교재 개발)	구성 정책	재분배 정책

다음으로 2순위에서는 배분정책 영역으로 ①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를 ‘대사회관계위원회’로 명칭 변경 청원, ②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의 건, ③ 노회와 총회 산하에 다음세대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청원, ④ 고신총회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 발행의 건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재분배정책 영역은 ① 총회 상회비 삭감 청원, ② (가칭) ‘교회자립성장원 준비위원회’ 구성 청원, ③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기도와 한 주일 헌금’ 요청의 건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정책 영역은 ① (가칭)고신교단 목회 후보자 영성훈련소 설립 청원, ② 정부가 교회에 대한 악법을

강행할 때 총회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의 건, ③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건의, ④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 ⑤ 목회자 후보생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총회적 제도 마련 제안 건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순위에 이어 2순위에서도 규제정책은 확인할 수 없었다.

1순위와 2순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배분정책은 1순위에서 3개, 2순위에서 4개로 총합 중복으로 7개가 해당하였으며, 재분배정책은 1순위 1개, 2순위 3개로 총합 중복으로 4개, 구성정책은 1순위 8개, 2순위 5개로 총합 중복 13개로 나타났다.

<표 4> 정책유형 1순위와 2순위 배정

구분	1순위	2순위	총합(중복)
배분정책 (distributive policy)	3개	4개	7개
규제정책 (regulatory policy)	-	-	0개
재분배정책 (redistributive policy)	1개	3개	4개
구성정책 (constitutional policy)	8개	5개	13개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제71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고, 해당 사항의 정책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해당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Lowi의 정책유형론을 수정하여 분석의 틀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유형을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고신교회들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딜레마적인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각 노회 및 위원회에서 상정한 총 81건의 상정안건 중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이 상정 내용에 있거나, 주요 내용으로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대응사항을 맥락적으로 담고 있는 상정안건의 경우 총 12건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14.8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유형 분석을 통해서는 1순위와 2순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배분정책은 1순위에서 3개, 2순위에서 4개로 총합 중복으로 7개, 재분배정책은 1순위 1개, 2순위 3개로 총합 중복으로 4개, 구성정책은 1순위 8개, 2순위 5개로 총합 중복으로 13개로 분석되었다. 규제정

책은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전술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고신총회가 코로나19를 이해하는 방식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을 매우 엄중하고,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71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전체 안건 중 약 15%에 해당하는 안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비율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비율은 고신총회 산하 교회들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필요들이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목회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들의 딜레마가 상당히 큼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둘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체계와 제도적 확립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가장 많은 빈도로서 구성정책 유형이 도출되고 있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기존 목회현장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는 위원회 혹은 제도에 기초한 체계적인 방향성을 원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명확한 사역 지원을 구성해보고자 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사항은 현장교회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인가를 시사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현장교회는 안정감있는 그리고 명확한 목회적 방향과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목회/사역적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배분정책 유형과 관련되는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목회/사역이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역량 있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양성’ 하며,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를 고민하면서 사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교회의 답답함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제공되는 목회/사역적 내용의 질에 대한 현장에서의 딜레마들이 잘 표현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동역자와 교회를 지원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취약한 미자립 소형교회들의 아픔을 보듬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위한 관심을 구체적인 위원회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해당 사항들이 실제적인 지원과 캠페인과 같은 형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 있는 중·대형교회들이 앞장서 줄 것을 소망해본다. 실제로 각 교회와 노회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후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활동들이 좀 더 총회차원에서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관련하

여 은퇴 목회자들을 향한 관심을 포함하는 의제도 구성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보편적 고통에 응답하고자 하는 고신교회의 성숙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음세대 신앙양육에 대한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12건의 상정된 안건 중 4~5개의 안들이 다음세대와 그들을 향한 목회자 양성을 담고 있어 ‘현존하는 미래’로서의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해나가야 하는 교회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코로나19로 허망하게 무너진 신앙교육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현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다음세대는 절대로 ‘다른 세대’(삿 2:10)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다음세대는 철저한 개혁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을 견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기독교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의 관심이 우리 ‘내부’를 넘어 좀 더 ‘외부(대사회적인 차원)’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정된 의제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이슈와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물론 해당 상황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맥락 속에서 자연스러운 단계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정도 관련된 논의가 안정화 단계에 이른 후에는 반드시 우리 외부의 사회적이고, 우리에게 부과된 공적인 책임과 활동을 수행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성령)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되,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도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sup>13)</sup>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보편적 고통에 응답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일곱째, 고신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을 위한 코로나 관련 정밀한 분석과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회와 목회자들은 사역 현장과 성도들의 상황을 ‘정밀타격’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전략과 접근이 필요함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다. 모든 상정안건의 경우, 교회 혹은 노회를 대상으로 수행된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인 분석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밀한 정책으로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이는 규제정책의 부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정책이 아닌 상정안건에서 연유하는 본질적인 성격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맥락에서는 더욱더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정확한 정책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전제될 때 정책의 효과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 정책의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up>14)</sup> 이는 철저한 분석과 조

13) 송영목(2019). 공공신학에서 본 세상 속의 천국. 교회와 문화, Vol. 42: 97-98.

14)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이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사에 기반을 둘 때 가능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신총회 내 ‘정책개발 및 정책 고도화 TF팀’이 상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좀 더 전문적인 수준에서의 정책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TF팀은 단순히 법안의 수정 차원을 넘어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교회 상황 진단, 의제 분석, 정책 개발, 정책 고도화 및 현장 적용, 정책 평가 및 환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항들을 핵심 과업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고신교회의 전반적인 정책 수행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신총회 총회교육원(202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천안: 총회교육원.
- 고신총회(2021). 제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자료. 미출판자료.
- 노재석(2010). 정책형성과정의 복잡성과 의제 지속성.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 백광훈(2021).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가 말해주는 것. 기독교신문 2021년 4월 19일 기사.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25> 2021년 8월 13일 검색.
- 송영목(2019). 공공신학에서 본 세상 속의 천국. 교회와 문화, Vol. 42, 94-127.
- 이현철(2021).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한국교회 내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청소년의 요구 분석. 고신신학, Vol. 23, 203-220.
- 질병관리청(202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발표 자료. <http://ncov.mohw.go.kr/> 2021년 8월 13일 검색.
- 질병관리청(202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발생현황 통계자료 <http://ncov.mohw.go.kr/> 2021년 8월 13일 검색.
- 최승헌(2021). 국회보다 낮은 한국교회 신뢰도…비신자 85%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에게 부정적 감정’. 뉴스앤조이 2021년 4월 16일 기사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54> 2021년 8월 9일 검색.
- 황준성·박균열·이희현·유경훈·주영효·윤선인·김홍주·김순남(2017). 교육정책의 현장 실행과정 및 개선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정책과제 보고서(RR 2017-05).
- Beeke, Joel R. (2013). *Through the Westminster Confession: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hapter 25.6*. <https://www.reformation21.org/confession/>
- Lowi, T. J. (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4), 298-310.
- 가톨릭대학교 [www.catholic.ac.kr](http://www.catholic.ac.kr)
- 대구가톨릭대학교 [www.cu.ac.kr](http://www.cu.ac.kr)
- 대전가톨릭대학교 [www.dcatholic.ac.kr](http://www.dcatholic.ac.kr)

---

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교회의 실제적인 사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해보라. 이현철(2021).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한국교회 내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청소년의 요구 분석. 고신신학 23호 203-220.

논찬

## “고신총회가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제71회 고신총회 헌의안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일국 목사  
(김해 늘푸른전원교회)

1. 이현철 박사님과 연구팀의 수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이현철 박사 연구팀은 일곱 가지로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제시했다. 제71회 총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안건을 적절하게 분석하여 결론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 분야에 관심을 두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안건을 상정한 고신총회 산하 여러 노회와 교회들의 관심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3. 이 연구에서 ‘Lowi의 정책 유형론’은 분석 틀로 사용되었다. <표2> ‘Lowi의 정책 유형론과 적용을 위한 수정 및 보완 의미’에서 발전적인 부분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기본 의미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이제부터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한다. 이현철 박사의 발제(“고신총회가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 제71회 고신총회 헌의안 분석을 중심으로”)는 제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총 81건) 중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12건의 상정안건을 4단계(상정안건분석→상정안건도출→분석 틀 적용→상정안건 분석)를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5. 분석 틀로 사용한 것은 Lowi(로위)의 “정책 유형론”이다. (아래 도표 참조)

<도표> Lowi의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

구 분		강제력의 적용대상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강제력의 행사방법	간접적 사용	배분정책	구성정책
	직접적 사용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이현철 박사는 첫째, 분석 대상이 ‘정책’이 아닌 ‘상정안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둘째, 교회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정책 분류 및 틀을 구성함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분석 틀로’ 사용한 Lowi의 ‘정책 유형론’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Lowi의 ‘정책 유형론’이라는 틀을 사용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보고서의 ‘연구의 한계와 제언’에서 밝힌 의견에 동의한다.

예를 들면 경남김해노회가 상정한 안건인 ‘정부의 현장예배 인원 제한 및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 건’은 ‘구성정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표 2>에 의하면, ‘구성정책’의 수정 및 보완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교회의 목회적 활동에 필요한 운

영규칙과 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책”. 위에서 언급한 경남김해노회가 상정한 안건이 ‘배분 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가운데 ‘구성정책’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하지만 총회가 정부 등을 대상으로 대사회적 행동을 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Lowi의 ‘정책 유형론’ 분석으로는 그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6. <표3>의 ‘정책 유형으로서 상정안건 분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思料]한다. 연구 결과 1순위만 볼 때 (1) 배분정책 3개, (2) 규제정책 0개, (3) 재분배정책 1개, (4) 구성정책 8개로 나왔다. <표2> “Lowi의 정책 유형론과 적용을 위한 수정 및 보완 의미”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분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만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경남김해노회가 상정한 ‘(가칭)고신교단 목회 후보자 영성훈련소 설립 청원’ 건은 ‘배분정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상 총회가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에 ‘배분정책’으로 보기보다 ‘재분배정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상정안건이 통과되고 재정을 후원하는 교회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7. 마지막으로 이현철 박사님과 함께 연구하신 연구진들의 수고를 통하여 얻게 된 연구의 결과물이 총회와 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들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정부의 역할과 조치에 대한 총회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정성엽 목사

(한교총/합신 총무, 남은교회 담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 그러나 시대정신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정당하게 교회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총회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여러 상황과 대응과 반응을 보면 안타깝다. 내 생각과 존재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며 몸부림치고 있는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겔 37:3)

### 1.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 1)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를 세우시고, 교회와 정부 각각에게 독립된 통치 권세를 주셨다. 교회에는 영적 권세를 주셔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가르치게 하셨다. 정부에는 시민적 권세를 주셔서 시민으로 준수해야 하는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sup>15)</sup>
- 2) 교회의 영적 권세와 정부의 시민적 권세는 서로 혼동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서로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 교회가 시민적 권세를 행사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정부가 영적 권세를 행사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sup>16)</sup>
- 3) 기독교인은 영적인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교회의 영적 권세에 순종하는 한편, 또한 정부의 시민적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sup>17)</sup>
- 4) 정부는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영적 권세를 존중하고,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sup>18)</sup> 교회는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시민법에 근거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5)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구실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행하는 통치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할 때야 인정된다(단 6:22-23).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는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sup>19)</sup>

15) 롬 13:1-2; 시 82:1,6; 요 10:35; 존 칼빈, 『기독교 강요』, 4.20.1.

16) 대하 26:1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4.; 23: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4.20.1-2.

17) 롬 13:4-5; 벰전 2:13-14,1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3.19.15.

18) 레 24:16; 왕하 18:3-4; 대하 34:33; 스 7:23,25-2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3.; 존 칼빈, 『기독교 강요』, 4.20.2-3.

19) 호 5:13; 행 5:29; 존 칼빈, 『기독교 강요』, 4.20.32.

## 2. 총회와 노회와의 관계

“교회를 운영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sup>20)</sup>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다. 교회의 각 치리회는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높고 낮음과 같은 등급은 없다. 보다 큰 치리회의 결정은 더 많은 교회를 대표한 것인 만큼, 그것이 성경과 위반됨이 없는 한 작은 치리회는 따라야 된다. 그러나 보다 큰 치리회도 어떤 중요한 결의에 있어서 보다 작은 치리회들에게 먼저 수의하는 순서를 경유한 후에 결정한다. 장로교 정치 원리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며 다스리는 요소도 가지고 있다. “Our Churches are governed from the bottom up, not from the top down.”<sup>21)</sup>

총회의 결정에 노회는 따라야 한다. 그러나 노회는 모든 결정과 기준을 총회에 다 맡길 수 없다. 노회는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공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짐을 져야 한다.

코로나 초기 상황에 교회는 총회적 지침을 요구했다. 그러나 총회적 지침에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너무 혼란스러웠다. 노회는 총회의 지침에 구속력을 가지고 따를 마음이 있는가?

## 3. 공교회의 명예와 교회의 공적 책임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는다.<sup>22)</sup>

복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세대와 교파별로 다원화된 교회가 공적 이슈에 대해 어떻게 통일된 목소리를 광장에서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공공성에 관한 정보나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알리고 실천에 옮기도록 할 수 있는지가 선결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 논의와 실천은 소수 그리스도인의 지적 유희나 또 다른 세련된 표현에 머물게 된다.<sup>23)</sup>

교회는 여전히 공적 교회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핑계대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교회는 공평성을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가? 방역 기준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교회가 파워블럭(power block)을 형성할 때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린다.

## 4. 총회와 공교회 연합단체와의 관계

한국교회총연합은 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는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단 연합 단체로서, 각 회원 교단간의

20) 『합신헌법』 제14장 교회정치와 치리회, 295.

21) I. V. Dellen & Martin Monsma, The Church Order Commentary, (1964), 184. 박윤선, 『헌법 주석』(영음사), 115.에서 재인용

22)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

23) 송영목,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SFC), 187.

연합운동과 공동의 목표인 복음의 전파와 변증에 있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33개의 총회(한국교회 90% 이상)가 회원으로 있으며 '3명'의 대표회장과 '현직'이 리더십을 책임지고 있다.

한국교회교단장회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한국교회의 교단장들이 친교를 나누고,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와 사회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증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23개의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 1년에 3번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의 대회장과 설교자 사무총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개혁신학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하여 장로교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며, 한국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통한 공동사역을 연구, 협의,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장총이 다른 연합단체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장로교회의 아름다운 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개혁주의 신학 일치운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총회들이 연합하여 교제하며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같은 신학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다.

총회는 연합 단체와 느슨하지만 견고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총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연합 단체가 하고 있는가? 총회는 연합단체가 하고 있는 일에 동의하는가?

## 5. 왜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는가?

시대정신은 늘 교회를 공격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는 등뼈가 꺾인 사탄의 마지막 발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1) 방역단계에 따른 교회의 반응

교회는 방역의 대상이 아니라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의 동역자다.

### 2) 낙태에 관한 법률

교회는 낙태와 관련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힘든 상황 속에서 태아를 출산하기로 결심한 임산부를 정성껏 돌보고 지원해야 한다. 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함께 미혼모와 어린 생명을 잘 키울 책임이 있다.

### 3) 평등에 관한 법률

교회는 차별 받는다고 느끼는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불러 주신 자리에서 공평과 의를 행해야 한다.

### 4) 가족관계법 개정안

## 6. 교회는 사회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분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보수적인 신학은 신학적인 정확성에는 매우 신경을 쓰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순하며 흑백논리적이고 상투적으로 접근하는 성향이 있다.<sup>24)</sup> 기독교를 너무나 보수적인 정치

와 일치시키는 것을 전혀 견제하지 않고 비판 없이 그대로 둔다면, 빈민 구제와 환경문제와 외교정책이라는 쟁점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교회 밖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 정치적 한계와 그리스도인들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수많은 실제 정책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려 깊고 신중하게 정치에 참여한다는 명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 밖에서 좋은 명성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력과 관련하여 신약성경이 요구하는 것이다. ...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때 지루한 상투어나 인신공격, 마니교적인 악평이 아니라, 지성과 정중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 날을 기대한다.<sup>25)</sup> 우리의 정치적 판단은 정당했는가?

### 7.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잘못만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처음 겪어 본 상황 속에서 총회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많이 부족했다. 우리가 얻은 경험과 교훈이 다음에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반응과 방법이 나오길 바란다.

- 1) 교회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 2) 교회의 책임
- 3) 총회는 draft group이 있는가? 논의의 과정이 있는가?
- 4) 교회는 총회의 방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를 것인가?
- 5) 전문가 그룹과 어떻게 상의할 것인가?
- 6) 공교회 연합 단체는 정책적 비전이 있는가?

### 8.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라.

1.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일보다 더 근본적이다. 성품이 행동보다 더 근본적이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 지는 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한없이 중요하다.
2.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이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장차 환하게 드러날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를 가리키는 표지이다. 그 때가 되면 온 세계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자 사역이다. 용기를 내자.<sup>26)</sup>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24) 칼 트루만, 『진보 보수 그리스도인』(지평서원), 148.

25) 칼 트루만, 189

26) 데이비드 웰스, 『용기있는 기독교』(부흥과개혁사), 356.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공예배의 신학적, 목회적 제안

(합신 총회 신학 연구위원회 2020. 2. 28)

점차 코로나 19의 사태가 심각해짐으로, 정부는 종교단체의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예배의 회집과 관련하여 본 합신총회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신학적, 목회적 이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합신교회에 알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사역을 선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 공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걸쳐 신자들에게 명하신 “명문화된,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계명”이며, 세상의 끝 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할 명령입니다.(출 20:8; 사 56: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 또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지키기로 서약한 의무입니다.(출 24:6-7) 따라서 각 지교회는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사 56:6; 행 2:42; 히 10:2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절)

2. 전염병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신자가 서약한 의무입니다. 전염병의 상황이 심각할 경우, 주일 공예배를 드리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집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재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전염병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은 수의 성도와 함께 공예배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공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교회는 공예배를 유지하기에 힘을 다하여야 하지만, 지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공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을 두려워하거나,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회원의 결정을 불신앙적인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공예배의 현장 출석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교회는 전염병의 감염으로부터 신자를 보호하고,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는 나병이나 전염성 있는 환자를 이스라엘의 진에서 분리시키는 구약의 교훈에도 선명히 나타나 있으며, (레 13:46) 넓은 의미에서 이웃 사랑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레 19:18; 마 22:39; 롬 13:10) 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생업이나 생활의 특성상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높거나, 또한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이 큰 교인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전염병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흩어진 처소에서 드리는 공예배의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공예배는 마땅히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드려야 합니다. 공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는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헌법 예배모범 “주일 공동 예배에 대하여”)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교회에 속한 회원이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교회의 공적 권위 아래, 합당한 예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 예외적이며 한시적으로, 공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각 처소에서 영상이나 예배문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도 간에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원리상의 결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소에서 임의로 드리는 사적 예배가 아니라, 지교회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에 영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으므로 공적 예배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6. 지교회는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현장의 공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교회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상을 이용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설교를 포함한 예배문을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지교회는 교인과 교통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는 교인이 공예배에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정상 녹화 영상을 준비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주일예배 시간을 정하여 함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배문의 방안을 이용하여 예배하는 경우에는, 예배문을 교인에게 전달하여 정한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각 가정의 예배 인도자는 담임목사를 대신하여 이 예배문을 낭독합니다. 예배문에는 목회기도와 설교문을 포함하여 가급적 자세한 내용을 담도록 합니다.

7. 모든 교인들은 현장의 공예배에 참석하여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기회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속히 사태가 진정되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대면하여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인 언약백성으로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고대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처소에서 영상이나 예배문으로 예배하는 것은 본래의 공예배의 원리와 목적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8.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의 교훈을 상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사태가 보건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초래하는 혼란을 직시하면서, 모든 신자는 이 세상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진리를 각성하도록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롬 8:21-22; 엡 2:2; 딤후 3:1-5) 이번 사태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재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갖도록 격려하여야 합니다.(마 24:6-8,21) 아울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아무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롬 8:28; 8:37-39)

9. 재난의 때에 지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존중히 여기며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을 격려해야 합니다. 지교회는 이러한 재난의 때에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마스크를 구입하여 교회 안의 가난한 교인들에게는 물론, 교회 밖의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는 작은 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행하였을 교회 행사들을 자제하고 삼가면서 정부의 지침을 잘 반영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소중합니다. 도리어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선한 행실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마 5:16; 벰전 2:12)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합신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 코로나 상황에서의 예배지침 (고신 총회)

## I. 서론

코로나 감염병(COVID-19)으로 인하여 예배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마땅히 드러야 할 공예배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 혹은 모범이 필요하게 되어 이 세부 지침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세부 지침은 비상 상황에서 적용되는 예외적인 권고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는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당회가 지고 있으므로, 각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지침서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의 예배지침 규정이 기초하여 개체 교회의 당회와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 II. 예배 원리에 대한 신앙고백과 예배지침

예배에 관한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에 표명되어 있다. 이 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성의 빛은 만물 위에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만물에 대해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 준다. 따라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며 의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관한 받음직한 방식을 직접 제정하시고 자기가 계신 뜻으로 제한하셨으니, 사람의 고안물이나 상상, 혹은 사탄의 제안에 따라, 혹은 보이는 형상 아래에서, 혹은 성경에 지시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절)

우리 헌법의 예배지침은 신앙고백서에 기초하여 주일 공예배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장 2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므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별 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1장 4조: 주일은 공동 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제3장 7조: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참석자들과 결석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야 한다.
2.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고백과 헌법의 예배지침 규정에 기초하여 코로나 감염병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공 예배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드릴 것을 권고한다.

### III. 공예배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예배를 관장할 책임을 부여받은 당회는 신앙고백과 헌법의 예배지침에 따라 가능하면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래의 지침들을 참조하여 공예배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1)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모든 성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주일예배를 여러 번 나누어서 드리도록 한다.

2) 주일예배 장소를 본당이나 교육관 등 가용 가능한 공간으로 나누어 최대한의 인원이 교회당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예배 인도자가 여러 명이 필요한데, 부교역자나 장로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문을 대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설교문은 미리 작성되어서 대독하는 사람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예배당에는 새가족이나 신앙이 약한 자들 그리고 전자기기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참석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4) 찬송과 성가대 찬양 방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가대들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따르면서도 찬송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 위해 교회에서 사라진 교창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창은 에베소서(5:19)에서 사도 바울이 명한 찬송 방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남녀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찬송을 부르거나, 다른 방법으로 교창을 하면 이를 통해 찬송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실현될 수 있다.

5) 봉헌은 반드시 예배의 한 순서로 넣어야 한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봉헌 순서마저 없으면 헌금을 성금처럼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배에 반드시 봉헌 순서를 넣어서 봉헌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중요한 순서이며 공동체적 예배 행위라는 것을 다 같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찬송 중에서 봉헌송을 잘 구별하여 부르게 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헌금과 봉헌을 하도록 해야 한다.

6)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수칙 매뉴얼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매뉴얼을 만들어 담당자를 지정해 놓으면 예배 중 공무원들이 방문하더라도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되고 공무원들과의 불필요한 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

### IV.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예배는 모든 신자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드려야 하지만, 예배당의 상황이나 개인의 건강, 방역수칙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경우, 당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예배지침에 따라 신자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1)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해야 한다.

2)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과 동일하게 예배 시간 전 가정의 한 장소를 정해서 예배에 합당한 경건한 복장을 갖추고 모여야 한다. 가정의 인도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예배 참석자들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야 한다.

3)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방해가 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삼가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에 따라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성도들과 한 예배당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4) 신자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과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해야 한다. 당회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여 온 성도가 동일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배 녹화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신자들이 임의의 시간에 개별적으로 예배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V. 결론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특권이자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순교를 불사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 안 되며,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공예배를 드리고 지켜야 한다. 예배를 관장할 책임을 부여받은 당회는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위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살피고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 감염병을 종속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여야 한다.

##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합신 선언문 (2020.9.22)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9인이 차별금지법안(이하 “입법안”으로 표기)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헌법이 이미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여 여러 법률과 법령이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차별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 입법안이 제정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진술하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 1. 차별금지법안은 인륜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은 모든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서 평등하게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입법안은 성별을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제안한다(법안 제1장 제2조 1항).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할 경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헌법 제36조)을 망가뜨리고,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이라는 존재와 더불어 성관계를 맺고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그 결과 남녀의 존엄은 물론이고 혼인한 남녀로 구성되는 가족의 고유한 가치는 사라지며,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보존하고 자손을 계승하려는 인류의 기본적인 의지는 파괴된다.

### 2.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은 국가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법안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국적,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기를 제안한다(법안 제1장 제3조 1항). 이 입법안을 따를 경우, 국민은 헌법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규정한 본래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더 나아가 헌법을 실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목적 상실하여 해체될 위험까지 있다.

### 3. 차별금지법안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므로(헌법 제19조), 양심에 따라 종교, 직업, 예술, 학문 등을 구별하고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입법안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기를 제안하고(법안 제1장 제1조), 특히 “성별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차별을 금지하기를 요구한다. 이 법안이 말하는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법안 제1장 제2조 5항). 그러나 첫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민은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훈련 등에서 양심에 따라 적합한 대상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 둘째, 이 법안대로 “성별정체성”의 정의를 받아들일 경우, 생물학적 성을 보장받을 양심을 박탈당하며(성은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성별 구별의 혼란과 사회 질서의 혼란이 야기된다.

### 4. 차별금지법안은 초법적인 지위를 행사한다.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최고 규범으로 여타 모든 법률, 명령, 규칙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법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입법안은 “대한민국헌법 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법안 제1장 제4조). 또한 이 입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고 말한다(법안 제2장 제9조). 그러나 문제는 이 입법안이 헌법을 넘어서는 초법적 지위를 행사한다는 데 있다.

#### 5.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 최상위 기관으로 만든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장 제1조). 그러나 입법안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헌법 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게다가 이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를 강력히 제안하면서, 이 때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한다(법안 제2장 제6조). 이 입법안을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상위 기관이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떠나 국가를 개조하는 권력을 행사할 중차대한 위험이 있다.

#### 6. 차별금지법안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 1항). 그러나 입법안은 수용자(고용에서 근로자, 교육에서 피교육자, 재화용역에서 이용자)를 유리하게 만드는 반면 선의의 제공자를 불리하게 만든다. 또한 성실한 노동으로 재화를 소유한 자를 사회악으로 여기며, 전통 윤리 개념에서 떠난 소수를 위해 윤리적 신념을 가진 다수를 악의적 범죄자로 만든다. 게다가 이 입법안은 진정인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구조를 요청하고(법안 제4장 제48조) 소송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지만(법안 제4장 제49조), 피진정인을 위해서는 민주적 사법체계와 상반되게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법안 제4장 제52조 “증명 책임”) 불가할 경우 징벌적 배상을 부과한다(법안 제4장 제44조). 이 입법안을 따를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한 또 다른 차별이 발생되고 봉합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

#### 7.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조장한다.

국민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안다(헌법 제36조). 그러나 입법안은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주장하여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조장한다(법안 제1장 제2조 4항).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정해체, 성도덕 파괴, 의학적 부작용, 다양한 치명적 질병, 인구 감소 등 위험이 발생하며, 동성애를 지향하지 않는 자들을 국가 기관이 나서서 법을 통해 역차별하는 불평등을 결과 시킨다.

#### 8. 차별금지법안은 교육에 혼란을 일으킨다.

입법안은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법안 제1장 제2조 4항과 5항; 제3장 32조),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양성애 등”(법안 제1장 제2조 4항)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것을 강요한다. 이 입법안은 영유아 때부터 미성년 자녀들에게(법안 제1장 제2조 9항) 성적 질병에 조기 노출, 조기 성적 체험, 외설적 성 이해, 급진적 성애화, 자녀출산 불가능 등 악질적 영향을 끼친다.

#### 9. 차별금지법안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1) 기독교는 성경에 따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약 3:9),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롬

3:23),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는 점에서 모두 평등하기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롬 3:22; 갈 3:28).

2)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기독교는 성경에 따라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믿으며(창 1:27; 마 19:4), 이성애만을 성적 순리라고 믿는다(롬 1:26-27).

#### **결론**

1) 우리는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 국회는 이 법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안을 폐기하고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확립해 주기를 바란다.

2)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첫째, 하나님의 법도와 인륜에 반하는 주장에 대하여 선언하고, 둘째, 기독교의 진리를 모든 상황과 모든 영역에서 공표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 “우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반대하고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교단장회의)는 2001년에 창립된 이래 한국사회가 공인한 성직자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23개 교단의 교단장들이 친교를 나누며 공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류하여왔습니다. 2021년 7월 20일에 모인 교단장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 제10822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시 119: 25).

1. 평등 법안은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평등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편향된 차별 금지로 역차별을 가져 오는 법안입니다. 편향된 차별금지는 인륜을 무시하고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여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선적인 법안입니다.

2. 평등 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정의하여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구별」과 「차별」을 오해하여 국가의 근본 체계와 병역제도 등의 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3. 평등 법안은 ‘괴롭힘’을 정의하면서 ‘혐오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고통을 주장하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의견이나 사상을 전하고 권한을 잃는 일이 ‘괴롭힘’으로 비방을 받게 됩니다.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로 인정되면 종교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되며, 성경에 근거한 목사의 설교가 ‘괴롭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4. 평등 법안은 차별행위를 역차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 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5. 평등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에 관한 최고기구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모든 헌법적 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규범을 무너뜨릴 수 있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초헌법적 기관을 출현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평등을 말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통제사회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6. 평등 법안은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스스로 성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해서 이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의학적,

과학적 평가와 가치 판단을 차별행위로 간주합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종교적 판단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오히려 동성애를 사회 윤리적으로 옹호하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7.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에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파괴하고,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20일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참가자 일동

## 낙태법 개정에 대한 합신총회 선언문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낙태법이 헌법불합치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낙태법 관련 조항인 형법 269조 일부를 2020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고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폐기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20년 10월 7일에 낙태법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14주-24주까지의 태아에 대해서는 24시간 숙려기간을 가지고 낙태를 허용한다는 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을 믿는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합신총회는 우리나라가 법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낙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악이다. 교회는 생명존중을 힘써 가르쳐야 한다. 동시에 교회와 성도는 낙태를 방조하는 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바른 법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힘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합신총회는 현재 정부가 고시한 낙태법에 대한 개정안을 반대한다.

하나. 합신교회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의 손으로 해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과 시대정신에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하나. 합신교회는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에 힘쓰는 것처럼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다짐한다.

하나. 합신교회는 낙태와 관련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힘든 상황 속에서 태아를 출산하기로 결심한 임산부를 정성껏 돌보고 지원하기로 한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함께 미혼모와 어린 생명을 잘 키울 책임을 확인한다.

하나. 합신교회와 성도는 불러 주신 자리를 지키며 공평과 의를 행하여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다짐한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생명을 존중하는 바른 법이 세워지며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0년 11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총회 총회장 박병화 목사

## 제13회 한국장로교의 날 2021 꽃동산 선언문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한국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장로교의 정체성을 지키며 한국교회의 신앙을 이끌어왔다. 한국장로교회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장로교 전통과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는다. 교권주의와 개교회주의를 극복하며 장로교회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회복하여 장로교 정체성을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 예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불러 주신 자리에서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이루고 선한 영향력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며 가족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지킬 것을 다짐한다.

하나. 한국장로교회의 미래는 다음세대에 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말씀과 신앙고백을 가르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게 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교회는 진실하고 충성된 목사를 세우는 책임을 갖는다. 우리는 좋은 학생을 신학교로 보내 바른 신학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준비되는 일에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이다. 한국장로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회복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장로교회 교인이다.

제13회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예배 참석자 일동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종합검토

- 헌법상 가족조항의 관점에서의 검토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 I. 문제 제기

- 제21대 국회에 들어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가족정책기본법」을 새로이 만들려는 시도가 거듭 이뤄지고 있음.
  - 그러한 입법 시도로 2020.9.1.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81, 이하 “남인순 안”)과 2020.11.2.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42, 이하 “정춘숙 안”)이 있음.
  - 2개월 간격으로 발의된 두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사실상 대동소이함.
- 입법형식의 관점에서 볼 때, 위 개정안들은 ‘일부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변경되는 내용의 중요성과 분량 등을 고려하면 ‘전부개정’에 해당하다고 판단됨.
  - 단순히 용어나 표현의 변경 차원이 아니라, 법령의 핵심적 부분의 근본적인 개정과 더불어 관련 사항을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전부개정의 방식을 취함.
  - 그럼에도 전부개정 아닌 일부개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음.
  - 특히 정춘숙의원안과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가진 2018년 남인순의원안은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하였음.
-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가 양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특히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이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성결혼을 뒷받침하려는 입법 시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반대하며 절대 불가함.

## II.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배경

- 남인순 의원은 특히 제19대 국회에서 일부개정안(2014.4.11.), 제20대에서 전부개정안(2018.12.7.)을 제출한 데 이어 제21대에 세 번째 개정안을 제출함.
- 제19대 국회 : 2014년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함.
  - 이 법은 ①가족구성원 간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 ②가족의 다양성 존중, ③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 “가족”이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제1호).
  -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함(안 제3조제3호)

삭제, 제15조, 제16조, 제30조,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

- 가정 및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8조제1항 및 제9조 삭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가족구성원의 직장과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제20대 국회 : 2018년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이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①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②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및 제1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홍보·가족교육·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문제의 예방·상담 등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건강가정사」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전문사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의 요건을 확인 후 가족전문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전문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

### III. 21대 국회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남인순의원안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가. 이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 나. “가족” 개념 삭제(안 제3조제1호 삭제).
  - 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가족정책”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함(안 제3조제3호 삭제, 제6조·제10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 등).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제8조 및 9조 삭제).
  - 마.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기본계획과 가족정책시행계획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함(안 제34조의2 및 제35조).
  - 사. 가정봉사원과 건강가정사를 각각 가족봉사원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0조 및 제35조).
- 이전 개정안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점은 첫째, 「가족」의 개념을 삭제한 것, 둘째, 「가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거의 대부분 「가족」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임.
    -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개념을 두지 않음. 즉 이전 개정안에서는 가족의 정의를 달리하기도 하였으나, 이번에는 가족의 정의규정을 아예 삭제함.
  - 여전히 「건강가정」 용어를 강력히 거부함
    - 현행법의 「건강가정」 용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이를 「가족지원」 또는 「가족정책」 등으로 대체하려고 함. 이에 따라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명칭 대신에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함.
    - 건강가정 용어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표현을 수정함.
  -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음.
    -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표현이 추가됨(안 제2조, 제4조 제2항).
  - 삭제된 부분이 있음.
    - 혼인 및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법 제8조 제1항) 삭제
    -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법 제8조 제2항) 삭제
    - 가족해체 예방 규정(법 제9조) 삭제
  - 현행법의 일부 규정을 재배치하거나 변경하고 있음.
    - 법 제8조를 삭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5조 제3항으로 이동함.
    - 「건강한 가정의례」를 「양성평등한 가족의례」로 변경함(안 제29조).

## 2. 정춘숙의원안

- 남인순의원안과 비교하면 더 강력해진 개정안으로 보임.

### IV. 개정안에 대한 평가

- 남인순의원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정춘숙의원안을 주목하여 검토함.

#### 1. 「가족정책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규정 삭제가 타당한가?

- 기본법은 관련 법령의 입법 및 해석의 근거가 되는 기본이념을 비롯해서 기본개념의 정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권한·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수립을 포함한 추진체계 등을 규정함.
- 그런데 가족 관련 법령의 기본법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 개념인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입법론으로 볼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을 해체하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 왜냐하면 가족의 개념에 따라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 및 내용, 적용범위 등이 결정되기 때문임.
- 이전의 개정안에서 가족의 개념을 혼인·혈연·입양만이 아니라 ‘사실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변경하려고 하였음을 생각할 때, 이번 개정안은 가족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의하여 다시 추가하되 그 내용을 재정립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봄.
- 또는 가족의 개념을 해석론에 맡겨둠으로써 여가가족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가족 관련 법률을 적용·집행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됨. 이에 따라 가정·가족정책의 수립에 대한 여가부의 재량을 넓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임.
- 한편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혼인이나 부모·자녀 관계 외의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提高)하겠다는 사업목표를 내세우고 있음.
  - 최근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
  - 즉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해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임.
  - 그 이유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이 모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거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가족교육·상담 서비스, 아이 돌봄 등 양육지원 사업 등 혜택이 비혼·동거 가정에게는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을 들고 있음. 또한 사실혼 관계인 비혼 부부는 배우자가 응급 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못하며, 비혼 부부는 서로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으므로 비혼 부부가 사별하면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의 상속권은 사망한 배우자의 호적상 가족에게 돌아가는 문제점을 지적함.
- 사실혼 관계인 비혼 부부의 경우, 일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임. 현행 법체계에 서도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법적 보호가 더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역의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 개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족 관련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더구나, 가족의 정의규정 부재로 말미암아, 비혼·동거 가정을 의미하는 사실혼 가족만 아니

라 동성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문제점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임.

- 사실상 이러한 해석을 의도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입법시도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는 반사회적 과잉 입법이기에 강력히 반대함.

## 2. 도대체 「가정」과 「건강가정」 개념을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남인순의원안과 정춘숙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건강가정」 개념을 삭제하려고 함.

- 남인순의원안은 2018년 개정안에서 「가정」의 개념도 삭제하려고 하였음. 2020년 개정안에는 가정의 정의규정은 남겨두고 있으나, 실제로 거의 모든 조항에서 가정을 가족으로 바꾸고 있음.

- 정춘숙의원안은 가정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모든 현행 정의규정 자체를 삭제하고자 함.

### ○ 도대체 왜? 「가정」과 「건강가정」 용어를 극도로 혐오하는가? 전체적으로 보건대, 「건강가정」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 용어도 함께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됨.

###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반대론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의 기고에 의하면, 이혼과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그 건강상태를 향상시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법적 토대가 바로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함<sup>27)</sup>.

-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과 건강가정 시책이 가족 돌봄의 지원 등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반대이유로 제시함.

### ○ 이러한 논의는 단지 용어에 관한 견해 대립 이상으로 가정 및 가족에 대한 기본인식과 가치관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음. 논의의 핵심은, 전통적인 혼인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가족 및 가정의 형성 외에 사실혼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동등하게 인정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귀결됨.

### ○ 여하튼 건강가정 개념을 거부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오해는 「건강가정」을 가정 관련 정책 및 입법의 지향점(목표)이라 보지 않고 이를 현실적인 가정의 유형(형태)으로 이해하는 것에 기인함.

- 즉 가정 유형이 어떠한 간에 모든 가정이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하는 「건강가정」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그렇지 아니하고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구분하여 가정 관련 법률들이 마치 전자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거 없는 피해의식의 발로라고 볼 것임.

### ○ 따라서, 다양한 가정의 유형을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강가정 개념은 가정 관련 법률의 지향점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편협한 이해에 기인하거나, 아니면 가정 개념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볼 것임.

### ○ 현행처럼 제3조에서 「가정」의 정의규정은 그대로 두면서도, 다른 조항들에서는 가정을 굳이 가족으로 바꾸는 것에 집착하는지 대단히 의아(疑訝)함. 이는 가족의 정의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가정의 정의규정만은 부득이 남겨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상식적으로 볼 때,

27) 김화중,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한다”, 한겨레신문, 2006.12.25.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80355.html>.

가정을 가족으로 바꾸려 한다면 오히려 가정의 정의규정을 없애고 가족의 정의규정을 남겨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여간 이번 개정안은 입법의 상식에 맞지 않음.

-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가정 개념을 삭제하려는 의도가 있음.
- 정춘숙의원안에 가정과 가족을 비롯한 모든 현행 정의규정을 삭제한 것은 더 충격적이며, 그 의도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파악됨.
- 가정을 가족으로 기계적으로 바꾸다보니 어법상 어색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나타남.
  - 현행법에서 규정하듯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가정은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임. 즉, 가족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며, 가정은 생활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핵심으로 함. 그래서 양자는 차원을 달리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개념임.
  - 경우에 따라 가족과 가정이 혼용될 수도 있으나, 개념적으로는 구별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1조 제2항 5호에서 “직장과 가족의 양립”은 어색함. 생활단위 또는 생활공동체로서 ‘직장과 가정의 병립’이 자연스러움. 또는 ‘직장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그나마 나을 것임.
  - 안 제21조 제4항의 ‘노인단독가족’은 부적절함.<sup>28)</sup> 가족 자체가 복수적 개념인데, 단독(1인)으로 가족이 된다? 1인가구는 적절한 표현이나 1인가족은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 아닌가?
  - 안 제21조 제4항의 ‘공동생활가족’은 무슨 의미? 현행법의 ‘공동생활가정’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이해됨. 이는 기계적으로 가정을 가족으로 바꾸다보니 나타난 표현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 이처럼 어법에 맞지 않은 개정안은 입법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옴.

### 3. 다양한 가족형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개정안은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제2조), “가족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라고 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강조함.
- 현행법은 다양한 가족형태로서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을 열거하고 있음(제21조 제4항).
- 그런데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의 범위가 하위법령 규정 또는 해석론에 의하여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큼.
  - 가족의 정의규정 부재로 말미암아, 동성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음.

### 4. 가족관계의 평등성을 더 강조하면서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가?

- 개정안의 기본이념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민주적 평등한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반하여 현행법은 개인의 필요 충족과 사회적 기능(사회통합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개정안은 가정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삭제함.
  -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법 제8조 제1항) 삭제
  -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법 제8조 제2항) 삭제. 또한 안 제5조 제3항에서도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가족해체 예방 규정(법 제9조) 삭제

28)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정춘숙 안에서는 이를 ‘노인단독가구’로 표현함(제21조 제4항).

- 이로 말미암아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이 약화되고, 낙태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며, 이혼 등 가정해체에 대한 예방 노력이 경시될 수 있어 심각함.

5.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이 아닌가?

-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내세우는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차별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이기에 심히 우려됨.
- 특히 정춘숙의원안 제26조(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의 개선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여가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매체에서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편견 등 내용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처럼 정춘숙의원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등이 대중매체(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에 나타난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도록 규정함. 이는 일종의 차별금지법 규정에 해당함.
- 이와 관련하여 정춘숙의원안은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며(제32조 제1항),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등 사회적 인식 확산”을 한국가족원의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제34조의2 제7항 제5호).
- 이처럼 정춘숙의원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서 작동하면서, 이와 관련한 계획·정책추진·평가·규제 등의 권한을 여가부와 한국가족원 등에게 부여함.
-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기에 심히 우려됨.
  - 실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은 그 자체로서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임.

6. 동성결혼의 합법화 근거로 원용될 것이 아닌가?

- 동성결혼 합법화의 명문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해석론에 따라 언제든지 동성결혼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안 제2조(기본이념)의 가능한 해석론
  -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 여기서 가족의 정의가 법정(法定)되지 않고 해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동성커플을 가족의 한 형태로 주장할 수 있음.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동성 동반자(same-sex partnership)' 또는 '시민 결합(civil union)'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성커플을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정하려는 해석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 여기서 「양성평등한」 아닌 「평등한」 가족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규정은 동성커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안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해석론
  - 모든 국민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 이 부분도 역시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정춘숙의원안에서도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 제2조(기본이념),

제12조(가족의 달과 가족의 날), 제32조(가족교육 등)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또한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하고 있음(제15조 제2호, 제26조 제명, 제28조 제2항 제2호)<sup>29)</sup>

- 이러한 점을 비춰보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에 동성커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임.
- 즉 평등한 가족(관계)이 “양성”평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 평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농후함.

## V. 종합 검토의견

- 두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시키고, 그 개념을 하위 법령 또는 추후 입법으로 재정의하거나 아니면 해석론으로 이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두 개정안은 가정 및 건강가정 용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음.
-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내세우는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차별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임. 특히 정춘숙 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서 작동하면서, 이와 관련한 계획·정책추진·평가·규제 등의 권한을 여가부와 한국가족원 등에게 부여함.
-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임.
  - 실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개정안은 그 자체로서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임.
- 두 개정안에서 동성혼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없지만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당사자 간의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한 이념적 바탕 위에, 동성커플의 결합을 ‘사실혼’의 새로운 유형으로 내세우며,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같이 두 개정안의 몇 규정들은 몇 단계의 논리적 조작 또는 연결에 의하여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번 두 개정안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을 규정한 현행 헌법에 직접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그러한 입법을 진행하기 위한 중간단계라 볼 수 있음. 또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해석론으로 동성결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을 강력히 반대함.

29) 한편, 정춘숙 안 제5조 제3항에서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실현”, 제26조 제1항에서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라는 표현을 남겨두고 있음. 이것이 의도적인 유보인지 아니면 단순한 입법상의 실수로 남겨진 것인지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드러날 것임.

논찬

## 정성엽 목사의 “정부의 역할과 조치에 대한 총회의 대응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평 및 질문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미래포럼을 위해 귀한 발제해 주신 정성엽 목사께 감사드립니다. 논평을 위해 발제문을 받아서 읽어본 바에 의하면, 아마도 정성엽 목사께서 발제문에는 간단하게 스케치만하고 발표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제의 방대함에 비해 발제문이 그리 길지 않았고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논평은 정성엽 목사께서 쓰신 글에 기초한 것이므로, 발표를 통해 보충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다루지 못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통해 보충될 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보면서 ‘고통’이라는 주제와, ‘정부에 대한 총회의 대응’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평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1.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정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첫째, 교회와 국가의 관계 문제는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정리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거의 17세기에 정리된 것으로, 그 이후 오늘날까지 국가의 개념, 범위, 권위, 역할, 정치체제 등이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컨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당시의 정치제도와 오늘날 21세기의 정치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또한 당시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 신앙을 어느 정도 바탕으로 둔 사람들이었던 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확장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두 상대자 중 하나인 ‘교회’는 발제문에 있는 대로 이해하지만, 국가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상대자가 언어와 개념이 달라 버리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해도 국가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과연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교회가 국가에게 이러한 정의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과연 했는지,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과연 그 방식은 바람직한지,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관계’란 원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원리가 중요하지만 실제도 중요합니다. 실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아무리 원리를 강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도 그러한데, 국가가 교회에 대해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가 국가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대해 왔는지가, 현재 국가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요? 교회가 어떤 정부든 국가에 대해 대하는 태도가 동일했는지, 아니면 교회가 지지하는 정부에 대해서와 그렇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차이를 많이 두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결국 현재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

금합니다.

넷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정리해 주신대로,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가 아니며 국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법이 다르고 국가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교회법을 국가법과 동일하게 요구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 국가에 그렇게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갖고 있고, 비록 극단적인 경우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의 경우 (일부라고 했지만, 세상사람들은 그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교회와 국가의 차이를 모르는 듯한 태도로 국가를 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발제자께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정리하시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삼으셨는데, 고백서 31장 5절(합신헌법 기준, 고신헌법의 경우 4절)에 보면 “공의회와 협의회는 교회 문제 이외의 일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겸손한 청원의 방식이나 국가 공직자의 요청에 의한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의 방식 외에는 국가의 사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근거해서 정부에 대한 총회의 대응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2. 연합단체의 역할

우리나라에 총회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국가 혹은 정부는 그 많은 정부를 다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합단체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신학과 교회정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서 하나의 총회를 이루기는 어려운 관계라도 대사회적인 일에 연합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지금 어느 단체가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대정부, 대사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계연합사역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현재 한국교회가 하나의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없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 3.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과 기독교적인 가치를 거슬러가는 것의 차이에 대해

발제자께서는 “왜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는가?”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이 교회라는 기관을 공격한다기보다는 기독교적 가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지?

## 4. 교회가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

1번의 다섯 번째 질문에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현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지나치게 과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케팅이나 집회, 심지어 폭언 등을 일삼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과연 이러한 방식이 정부의 태도 변화나 불신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 태도 변화도 끌어내지 못하고, 도리어 불신자들에게 ‘무례한 기독교’(이 표현은 리처드 마우의 책 제목을 염두에 둔 것임)라는 인상을 준다면, 교회가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계가 복음적이고 신학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접

근해 되는 것은 아닌지, 교계연합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마치면서**

논평자로서 발제자의 원고에 대한 요약과 칭찬을 많이 해야 하는데, 발제자께서 원고에는 많은 내용을 담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은 발제자에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포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의견과 고민, 논의가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